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

(1994. 1. 7, 법률 제4,721호)

◇ 개정이유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집중의 효율적인 억제와 수도권안의 지역간 불균형의 해소를 위하여 수도권의 권역을 조정하고, 과도한 인구 등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대의 물리적·직접적인 규제방법에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제적·간접적인 규제방법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수도권정비에 관한 억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수도권정비시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종전에는 수도권의 권역을 이전촉진권역·제한정비권역 등 5개권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조정함(법 제6조).
- 나.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새로운 공업지역의 지정은 엄격히 통제하되, 기존 공업

지역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위치변경과 공업용지조성사업은 허용하도록 함(법 제7조).

- 다. 수도권지역의 주택공급확대와 균형개발을 위하여 성장관리권역에서의 중소 규모의 주택조성사업 및 관광조성사업 등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없이 수도권정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함(법 제8조).
- 라. 종전에는 도시권안의 업무시설·판매시설 등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축을 물리적으로 억제하는 직접규제방법을 취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신축·증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경제적·간접적인 규제방법으로 전환하며, 징수된 관리부담금은 지역의 발전과 지방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함(법 제12조 내지 제16조).
- 마. 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개별적인 규제는 완화하되, 수도권에 과다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동시설을 신설·증축할 수 있는 총면적의 한도를 정하여 운용하도록 함(법 제18조).

〈법제처 제공〉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이라 함은 국토건설 종합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 건설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함은 학교·공장·공공청사·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4.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함은 택지·공업용지 및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5. “공업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 지역

나. 국토이용관리법 기타 관계법률에 의하여 공업용지 및 이에 부수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지역

제3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안에서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야서는 아니된다.

③ 수도권안에서의 공장 신설·증설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범위안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을 적용한다.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건설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

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1. 수도권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 및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권역의 구분 및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적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수도권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의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정비에 관한 사항
-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할 수 있다.

